

# 대한민국 재외선거 - 이렇게 합니다.



제공일자 2010. 7. 28.

총 1면

[www.nec.go.kr](http://www.nec.go.kr)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---

## 기부행위는 주는 행위 외에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

---

- ◎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.

기부행위는 「주는 자」와 「받는 자」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「주는 행위」뿐 만 아니라 「받는 행위」도 금지합니다.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“금지대상자”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기부를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한 자와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·물품 가액을 제공받은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.

- ※ 100 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 배 이상 50 배 이하(3,000 만원 상한)의 과태료 부과(공직선거법 제 261 조⑥)
- ※ 금지대상자 : 후보자(예정자)나 그 가족, 선거사무관계자, 정당, 정당의 대표자, 국회의원,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등

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

□ 희망돼지 저금통은 개당 시가가 불과 몇백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에 해당하고, 그 배부에 관하여 당연히 비용지출이 따르는 것이어서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함(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도 8168 판결)

<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([www.nec.go.kr](http://www.nec.go.kr)) >